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1

발의연월일: 2022. 8. 1.

발 의 자:배준영・유경준・권명호

이태규 · 조명희 · 정경희

이달곤 · 최춘식 · 박대수

윤창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에 근속연수 및 환산급여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함.

그런데 퇴직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재직기간 동안 개인이 납부해 온 금액에 기존의 근로에 대한 금전보상적 성격이 더해진 금액으로 주로 퇴직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처목 신설).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 수가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소득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처.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u>
	소득 중 제48조제1항에 따
	른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인 근로자가 받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